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40
----------	------

제출연월일: 2018. 8.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생활체육시설 예약취소에 대한 위약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할인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생활체육시설 예약취소가 빈번하여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예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약금 인상 및 취소시점에 따라 차등화 함 (안 제8조제3항)
- 나. 출산장려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4~6급 장애인을 감면대상으로 추가 (안 별표 2)
- 다. 문화강좌실(강의실) 사용료 기준 마련(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8. 7. 11. ~ 2018. 7.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용료는 별표 2, 3에서”를 “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2, 시설사용료는 별표 3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경우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의 프로그램 사용료

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를 공제 후 반환

3. 별표 3의 시설사용료

가. 사용개시일 21일 전: 전액반환

나. 사용개시일 20일 전: 10분의 1

다. 사용개시일 15일 전: 10분의 2

라. 사용개시일 10일 전: 10분의 3

마. 사용개시일 5일 전: 10분의 4

바. 사용개시일 1일 전: 10분의 5

사. 사용개시일 이후: 반환불가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성동구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액(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사용료 구 분	대 상	기 본 사용료	강 습 프 로 그 램 월 사 용 료 (1시간 기준)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수 영 장 (1일 1회)	성 인	5,100	18,500	37,800	54,400	68,200	80,000	91,300
	청소년	3,500	11,600	27,000	40,000	46,900	55,900	62,500
	어린이	2,700	9,300	20,400	31,200	37,200	43,500	48,400
체 육 관 등 (1일 1회)	성 인	3,700	13,000	26,600	40,100	48,400	57,200	64,700
	청소년	2,700	10,800	19,200	29,100	35,500	43,000	48,500
	어린이	2,300	10,000	17,000	24,200	30,100	35,200	40,300
테니스장	성 인	10,000 (1면 2시간 기준)	월 150,000					
	청소년 (어린이)	5,000 (1면 2시간 기준)	월 100,000					
비 고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②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③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④ 단체(10명 이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30퍼센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13세 이하 1명 이상 포함)의 부모와 자녀 중 1명, 「장애인복 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3급 장애인 및 동반자 1명, 4급~6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퍼센트 ⑤ 가입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⑥ 성동구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자녀에 대해 30퍼센트 5. 개인·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특별프로그램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 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별표 3]

성동구립체육시설 시설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행사
체육관(대체육관): 1회 1시간 기준	55,000	66,000
강 당(소체육관): 1회 1시간 기준	37,500	45,000
문화강좌실(강의실): 1회 1시간 기준	15,000	18,000
야구장: 1회 2시간 30분 기준	55,000	-
축구장: 1회 2시간 기준	50,000	-
풋살장: 1회 2시간 기준	20,000	-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 가산, 야간 사용은 해당 주간사용료에 30퍼센트를 가산함. (주간 06:00-18:00, 야간 18:00-23:00) 2.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3.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전용사용료에 의한 시간단위로 산정 징수 한다. 4.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5. 조명 및 냉난방기사용료를 제외한 부속시설사용료 포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p> <p>② <u>사용료는 별표 2,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③ <u>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p>1. (생 략)</p> <p>2. <u>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를 공제 후 반환</u></p> <p>3. <u>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를 공제 후 반환</u></p>	<p>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2, 시설사용료는 별표 3에서-----</u> -----.</p> <p>③ ----- -----</p> <p><u>경우 사용자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u>별표 2의 프로그램 사용료</u> 가. <u>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반환</u> 나. <u>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 이내를 공제 후 반환</u></p> <p>3. <u>별표 3의 시설사용료</u> 가. <u>사용개시일 21일 전: 전액반환</u> 나. <u>사용개시일 20일 전: 10분의 1</u> 다. <u>사용개시일 15일 전: 10분의 2</u> 라. <u>사용개시일 10일 전: 10분의 3</u> 마. <u>사용개시일 5일 전: 10분의 4</u> 바. <u>사용개시일 1일 전: 10분의 5</u></p>

[별표 2]

성동구립체육시설사용료 상한액(제8조제2항 관련)

(단위: 원)

사용료 구분	대상	기본 사용료	강습프로그램월사용료(1시간 기준)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수영장 (1일1회)	성인	5,100	28,000	37,800	54,400	68,200	80,000	91,300
	청소년	3,500	11,600	27,000	40,000	46,900	55,900	62,500
	어린이	2,700	9,300	20,400	31,200	37,200	43,500	48,400
체육관 등 (1일1회)	성인	3,700	13,000	26,600	40,100	48,400	57,200	64,700
	청소년	2,700	10,800	19,200	29,100	35,500	43,000	48,500
	어린이	2,300	10,000	17,000	24,200	30,100	35,200	40,300
테니스장	성인 (1면 2시간 기준)	10,000	월 150,000					
	청소년 (어린이)	5,000 (1면 2시간 기준)	월 100,000					
비고	1.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임							
	2.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기본 사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사용료 할증							
	①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아침(06:00~09:00), 저녁(18:00 이후)은 30퍼센트							
	② 문화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비고	4. 사용료 할인							
	① 단일 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퍼센트, 주 3-4회는 30퍼센트, 주 5-6회는 40퍼센트							
	②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③ 종목별 이용일이 다른 복합 프로그램으로 각 종목별 주 3회 이상인 경우는 각 종목별 사용료 합계 금액의 30퍼센트, 그 밖의 경우는 저렴한 종목의 사용료에 준하되, 주 이용 횟수는 주간 총 이용 횟수를 기준으로 함							
	④ 단체(10명 이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30퍼센트,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3자녀 이상)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 및 동반자 1명, 「국가유공자 등에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퍼센트							
비고	⑤ 가입여성(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⑥ <신 설>							
	5. 개인·소그룹강습, 댄스, 주말 등 전문·특별프로그램							

[별표 2]

프로그램 사용료

(단위: 원)

사용료 구분	대상	기본 사용료	강습프로그램월사용료(1시간 기준)					
			주 1회	주 2회	주 3회	주 4회	주 5회	주 6회
수영장 (1일1회)	성인		(현행과 같음)					
	청소년		(현행과 같음)					
	어린이		(현행과 같음)					
체육관 등 (1일1회)	성인		(현행과 같음)					
	청소년		(현행과 같음)					
	어린이		(현행과 같음)					
테니스장	성인 (1면 2시간 기준)	10,000	(현행과 같음)					
	청소년 (어린이)	5,000 (1면 2시간 기준)	(현행과 같음)					
비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사용료 할인 (개인별 중복할인 불가)							
	① (현행과 같음)							
비고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체(10명 이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30퍼센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13세 이하 1명 이상 포함)의 부모와 자녀 중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3급 장애인 및 동반자 1명, 4급~6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퍼센트							
	⑤ (현행과 같음)							
	⑥ 성동구 거주하는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 30퍼센트							
비고	5. (현행과 같음)							

의 성격을 띤 경우는 공공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강사료를 감안하여 책정. 6.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6. (현행과 같음)

[별표 3]

성동구립체육시설 기본전용사용료

(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체육경기 <신 설>	체육경기 이의 행사, <신 설>
체육관(대체육관): 1회 1시간 기준	55,000	66,000
강 당(소체육관): 1회 1시간 기준 <신 설>	37,500 <신 설>	45,000 <신 설>
야구장: 1회 2시간 30분 기준	55,000	-
축구장: 1회 2시간 기준	50,000	-
풋살장: 1회 2시간 기준	20,000	-
비 고	1.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평일의 30퍼센트 가산, 야간 사용은 해당 주간사용료에 30퍼센트를 가산함. (주간 06:00-18:00, 야간 18:00-23:00) 2.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0퍼센트, 야간은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3.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기본전용사용료에 의한 시간단위로 산정 징수 한다. 4.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실제 금액임. 5. <u>부속시설사용료 포함</u>	

[별표 3]

----- 시설사용료 -----

(단위 : 원)

구 분	체육경기 (비영리 목적)	체육경기 이의 행사 (영리 목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문화강좌실(강의실): 1회 1시간 기준</u>	<u>15,000</u>	<u>18,000</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비 고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u>조명 및 냉난방기사용료를 제외한 부속 시설사용료 포함</u>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문화강좌실(강의실) 신설에 따른 이용료 수입 발생 (제8조제2항 관련 별표 3)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문화강좌실을 신설하여 수입이 일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경미하여 미첨부

4. 작성자

- 문화체육과 행정9급 김가람 (☎02-2286-5213)

< 관 계 법 규 >

□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4.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8. 17.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8. 8. 20.

다. 상정일자: 2018. 8. 29.

(제240회 임시회 개최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행정관리국장

나. 제안이유

생활체육시설 예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할인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시설 예약취소가 빈번하여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예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약금 인상 및 취소시점에 따라 차등화 함
(안 제8조제3항)

나. 출산장려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4~6급 장애인을 감면대상으로 추가 (안 별표 2)
다. 문화강좌실(강의실) 사용료 기준 마련(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8. 7. 11. ~ 2018. 7.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와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먼저, 안 제8조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별표2]프로그램 사용료와 [별표3]시설사용료를 구분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사용허가 취소 요청 시기에 따라 차등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용자의 단순 변심 등에 따른 잦은 취소를 억제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책임감은 높임으로써 원활한 시설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짐

- 또한,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및 확대와 체육시설 사용 대상에 ‘문화강좌실’을 추가함으로써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와 생활 체육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다만, ‘문화강좌실’ 시설 사용료는 추후 잦은 사용료 변경에 따른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용료 감면 대상 및 대관 대상 체육 시설 확대가 재정 균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내실 있는 시설 운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